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06
----------	-----

2019년 9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시장제출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검토보고·심사보류】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 9월 4일 2차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나백주 시민건강국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 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확대 및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나.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은 2019년 9월 21일까지이나, 먹거리마

스터플랜 2030 수립 추진과 변화하는 먹거리 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위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까지 연장하는 조문 신설(안 제35조)
-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 삭제(조례 제6667호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 (2019. 7. 4. ~ 7. 24.)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별도 첨부

###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개정안의 제출 사유

- 서울특별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확대 및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9년 9월 21일로 일몰되어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추진과 변화하는 먹거리 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안된 안임.

#### 2 개정안의 내용 검토

- 개정안은 제35조를 신설하여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2022년 9월 21일까지로 연장하는 안으로 먹거리 시민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제21조에서 제34조에 걸친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u>
<u>제35조 (생 략)</u>	<u>제36조 (현행 제35조와 같음)</u>
부 칙 〈 제6667호, 2017.9.21. 〉	부 칙 〈 제6667호, 2017.9.21. 〉
<u>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21</u>	<u>〈삭 제〉</u>

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sup>1)</sup>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설치할 때 계속 존속하여야 하는 명확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하는 경우 위원회는 존속기한에 의하여 폐지되어야 함.
- 또한 같은 조례에 따라 먹거리시민위원회의 경우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에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정하고 있었던 상황임.
- 먹거리 시민위원회는 먹거리마스터플랜 2020에서 제안된 각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조직된 위원회로 판단할 수 있으나 각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참고하여 볼 때, 2018년부터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던 것으로 파악됨.

1)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산하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 공공급식분과위원회 2018년 9월 12일  
[공공급식 개선계획 보고 및 2030 수립방향 논의]
- 식품안전분과위원회 2018년 7월 17일  
[2030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자문·심의 과제 자료공유 및 논의]
- 도농상생분과위원회 2018년 7월 18일  
[분과별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수립을 위한 제안사항 논의] 등  
이외의 다수의 회의에서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수립을 위한 논의  
가 있어 왔음.

### 3 개정대상 사무의 추진실적

- 먹거리시민위원회는 10개 분과 각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대 150명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별 회의개최실적과 위원회별 위원 참석율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7년 이후 실적의 종합임.

연번	분과위원회 명	회의개최실적	참석율 <sup>2)</sup>
1	공공급식분과위원회	10	56.0%
2	도시농업분과위원회	7	73.3%
3	식품안전분과위원회	7	57.5%
4	도농상생분과위원회	16	62.6%
5	지속가능식생활분과(영양과건강)	11	53.5%
6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	13	45.6%

7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	18	61.7%
8	먹거리문화교육홍보위원회	15	62.7%
9	먹거리생태분과위원회	14	64.6%
10	먹거리복지분과위원회	12	53.3%
	전체평균	12.3(회)	59.1%

- 먹거리자치분과위원회가 18회로 가장 많은 회의개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농업분과위원회와 식품안전분과위원회의 경우 회의개최실적이 각 7회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참석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가 13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참석율은 45.6%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도시농업분과위원회가 7회 회의를 하였으나 73.3%로 참석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참석율이 가장 높은 도시농업분과위원회의 경우 분기별 1회 정도의 회의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참석율이 가장 낮은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의 경우 분기당 약 2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 개최의 숫자와 참석율 사이의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2) 위원이 중도사퇴하는 경우 위원회 구성원이 줄어든 것을 반영한 실질 참석율임. 예를 들어 15명 정원에 10명이 참석하는 경우 66.6%가 되나 위원이 중도에 사퇴하여 12명이 정원이 되는 경우 83.3%로 계산됨.

## 도시농업분과위원회 회의개최실적

연번	회의날짜	주요내용	참석인원 (참석/ 현원)
1	2017.12.5	·총무및기획위원회위원선출 ·분과별정보공유및소통창구운영동의,정례회의일정논의등	10/15
2	2018.3.20	·'18. 육성 및 지원계획 자문 ·박람회 준비상황 보고 ·조례 시행규칙안 심의 ·도시농업3.0 플랜 방향논의	12/15
3	2018.6.15	·박람회 소위원회 활동 및 논의사항 보고 ·활성화 소위 활동 논의사항 보고 ·먹거리마스터플랜 관련 도시농업분야 중간진단 논의 ·기타 정보공유 및 공람	10/15
4	2018.10.19	·박람회 소위원회 활동보고 및 논의 ·활성화 소위원회 활동보고 및 논의 ·2019년 주요 사업예산안 보고	7/15
5	2018.10.26.	·제4기 위원 위촉,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 ·소위원회 구성 및 소위위원장 선출 등	13/15
6	2019.1.15	·박람회 소위원회 활동보고 및 논의 ·활성화 소위원회 활동보고 및 논의 ·19년 주요사업예산안 보고	15/15
7	2019.7.10	·현안사항보고 ·2020년 주요사업 보고	10/15

##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먹거리산업)위원회

연번	회의날짜	주요내용	참석인원 (참석/ 현원)
1	2017.11.28	·분과위원장 및 총무, 기획위원회 위원 선출	8/13
2	2018.1.11	·분과 역할, 활동계획, 운영방안 논의	6/13
3	2018.3.23	·2018년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자문·심의 사업 선정 관련 논의	7/13
4	2018.4.18	·2018년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 자문·심의 사업 선정 관련 논의	5/13
5	2018.5.18	·먹거리시민위원회 발굴사업 관련 논의 등	5/13
6	2018.6.19	·사회적경제분과 자문심의 과제에 대한 자료공유	6/13
7	2018.7.16	·분과별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을 위한 제안사항 논의 등	5/13
8	2018.8.23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수립을 위한 제안사항 논의	3/13
9	2018.10.25	·2030 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향후 방향 논의	5/13
10	2018.11.27	·2030 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향후 분과역할 정리	7/13
11	2019.4.11	·2030먹거리마스터플랜수립을위한분과역할및방향논의 ·먹거리사회적경제분과집중회의안건관련논의	7/14
12	2019.5.15	·2030 먹거리마스터플랜정책제안관련논의	8/14
13	2019.6.12	「2020 지속가능한 먹거리실천 공모사업」관련논의 ·「2019년 지구밥상실천단 실천지침」관련논의	6/13

- 개정안의 심의에 있어 회의실적과 참석율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

으로 여겨지며 전체 참석율이 60%에도 이르지 못하는 점 등은 시민위원회의 존속과 관련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동 사무가 150명이 참여하는 큰 규모의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참석은 60%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존속 기간 외에도 위원회의 규모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4 종합의견

-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최대 5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2년간 운영해 온 위원회를 3년 연장하는 안에 대하여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먹거리시민위원회의 존속과 관련하여 사무의 추진실적이 사무존속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개정안의 심의가 요구된다 할 것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호	906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등 먹거리정책의 지속적 추진·확대 및 발전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 나.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은 2019년 9월 21일까지이나,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수립 추진과 변화하는 먹거리 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확립을 위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까지 연장하는 조문 신설(안 제35조)
- 나. 위원회의 존속기한 삭제(조례 제6667호 부칙 제2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 (2019. 7. 4. ~ 7. 24.)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제36조로 하고,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  
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6667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부칙 제2  
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5조 (생 략)</p> <p>부 칙 〈 제6667호, 2017.9.21. 〉</p> <p>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21조</p> <p>조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p>	<p>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21일까지로 한다.</p> <p>제36조 (현행 제35조와 같음)</p> <p>부 칙 〈 제6667호, 2017.9.21. 〉</p> <p>〈삭 제〉</p>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먹거리시민위원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운영으로 예상되는 최대 142명의 위촉직 위원 회의 수당이 연평균 3억원 미만으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사항임 (산출근거 : 142명×150,000원×12회 = 255,600천원)

4. 작성자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유효연(02-2133-4709)